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68

발의연월일: 2021. 4. 14.

발 의 자:권칠승·고영인·고용진

김한정 • 노웅래 • 박광온

박 정・신영대・신정훈

양경숙・윤영찬・이규민

이장섭 · 정필모 · 조승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물상 등과 같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의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법을 통해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된 확산으로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뿐만 아니라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해당 공제특례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있어 일몰 이후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경영과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의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됨.

이에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재활

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을 "2024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
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	례) ①
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u>2024년</u>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	
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	
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	
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